

바지락

바쁜 출근, 지친 퇴근, 즐겁게 바꾸자

2024년 03-04월호

2, 3면 2, 3면 노동자가 꼭 알아야 할 산업재해보상

4, 5면 "야, 너도 노조할 수 있어!"

- 정은영 금속조합원 인터뷰

6, 7면 구광 블랙리스트 사태와 노동조합할 권리

8면 QR코드 활용 꿀팁

* 제호 글씨 디자인 : 최진숙 금속노조 조합원



전국금속노동조합



노동자가 꼭 알아야 할 **산업재해보상**

노동자가 꼭 알아야 할 산업재해보상 문·답



문 1 일하다, 쉬다, 출퇴근하다 아프고 다쳤을 때, 누구에게 책임이 있나요?

답 1 업무상 재해는 노동자의 과실과 상관없이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용자는 의무로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보험료도 전액 부담합니다.

문 2 산업재해보상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답 2 출근 첫날 다쳐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폐업해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4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노동자라면 일용직, 아르바이트, 현장실습생, 외국인 연수생 등 누구나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 사고, 유해인자 취급으로 출산한 자녀의 부상, 질병, 사망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장시간 노동, 관리자·상급자 괴롭힘, 업무 스트레스 정신질환도 산재로 인정합니다.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은 일하는 곳입니다. 업무로 아프거나 다쳤다고 판단하면 꼭 산재보상을 신청해야 합니다.

문 3 회사가 산업재해보상 신청 대신 공상처리를 권한다면?

답 3 공상처리는 사업주가 말을 바꾸거나, 회사가 폐업하는 등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면, 보상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공상처리 후 후유증이 남거나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보상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 4 출퇴근, 일하다 다치거나, 업무로 인한 질병이 생기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 ▲ 질병, 사고 발생하면 바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진료 시 근무 중 다친 사실, 과로 여부, 회사에서 겪은 일들을 분명하게 얘기해야 합니다.
- ▲ 본인이나 가족이 병원 원무과,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고용산재토달서비스 등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신청서에 인적 사항과 사업장 정보, 업무 내용, 재해 발생 경위 등을 기재하는데, 경위에 사고 당시 상황, 업무와 질병 인과관계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 ▲ 산업재해보상 신청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아도 됩니다. 사업주는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나 신청을 거부할 권리가 없으며, 회사가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거나, 은폐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문 5 사업장 안에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 ▲ 재해 현장의 사진을 찍고, 목격했다면 경위를 기록합니다.
- ▲ 신체 부담 업무작업 수행 모습, 작업 공정 등을 사진, 동영상으로 촬영합니다.
- ▲ 산재 불승인 대응을 위해 산재 결정 단위(공단 지사·본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자료를 확보합니다.

일하다가 다쳤거나 아프다면 잊지 말고 산업재해보상을 신청합니다.

산업재해보상 신청은 모든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노동조합과 함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합니다.

“아, 너도 노조할 수 있어!”

금속노조,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2024년 <바지락>은 우리 옆에 일하는 동료처럼 가깝고도 친근한 금속노조 조합원을 소개합니다.

이번 호는 서울 구로구에서 일하는 정은영 금속노조 조합원을 만났습니다.



어떤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요?



세일애펜이라는 자동차 카시트 커버를 만드는 회사에 전문 기술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현대·기아차 2차 협력사이고, 주로 기아차 카시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노동조합에는 어떤 계기로 가입하셨나요?



저는 이미 현장에 금속노조가 있는 상태에서 입사해서 자연스럽게 가입을 했습니다. 선배 언니들에게 회사가 어렵다며 상여금을 삭감한다고 해서 금속노조에 가입했다고 들었습니다. 처음엔 파업도 하고, 농성도 하고 회사 안에서 투쟁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가 만든 듯한 노동조합이 생겨 갈등이 있었다고 하고요. 하지만 지금은 노동조합이 많이 안정되고, 단합을 잘 하고 있어요.



혹시 노동조합 가입이 부담스럽거나 어렵진 않았나요?



입사했을 때 이미 많은 동료가 노동조합에 가입해있어서 노동조합 가입은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큰 부담 없이 자연스럽게 가입할 수 있어서 그 점이 좋았습니다.

[인터뷰 - 정은영 서울 구로 금속노조 조합원]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가장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일단, 동료들과 단합이 잘 돼서 좋습니다. 노동조합이 없는 다른 회사라면 감히 관리자나 사장님이랑 마주하고 얘기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을 텐데, 세일애크는 그런 게 가능해요. 특히 관리자들이 현장 조합원들에게 항상 존댓말을 하고, 잔업이 있을 때 양해를 구하는 게 노동조합이 없는 회사와 다른 점이라고 생각해요.



노동조합 가입을 망설이는 노동자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다른 회사에 다닐 땐 나의 권리가 무엇인지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세일애크에서 일하면서 나의 권리가 무엇인지 알 수 있었어요. 노동조합을 통해 노동자권리를 보장한다는 걸 생생하게 알았어요. “나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노동조합이 꼭 필요합니다”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쿠팡 블랙리스트 사태와 노동조합할 권리

지난 2월 로켓배송으로 유명한 쿠팡이 ‘블랙리스트’로 불리는 채용제한자 목록을 작성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간 사람 수는 무려 16,450명에 이릅니다. 쿠팡은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쿠팡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실제 불이익을 가했다고 합니다. 시민들은 군사독재 시절에나 있을 법한 일이 2024년에 버젓이 일어났다는 사실에 매우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쿠팡은 “직원에 대한 인사평가는 회사의 고유권한이며, 사규 위반 등을 일삼는 일부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블랙리스트 작성에 최소한 객관, 일관 기준이 없고, 절차 정당성도 없었습니다. 관리자 마음대로, 제멋대로 평가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돌봄, 육아, 자기계발, 군입대를 이유로 블랙리스트에 오른 사람도 있습니다. 게다가 일한 적도 없고, 취업 시도도 하지 않은 기자들도 명단에 들어 있었습니다.

● 블랙리스트, 엄연한 불법

근로기준법은 ‘40조 취업 방해금지’ 조항을 통해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어기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한국에서 일자리를 두고 노동자는 사용자보다 약자의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어서, 법으로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이유로, 누군가의 방해로 취업할 수 없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할까요? 실체가 있는지 없는지, 타당한지 부당한지조차 알 수 없는 낙인이 꼬리

표가 되어 생계에 지장을 준다면 정말 심각한 일입니다.

심지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사업주가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2017년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들은 조선업계에 떠도는 블랙리스트를 철폐하라며 100일 넘게 고공농성을 벌인 끝에 재취업할 수 있었습니다.



● 윤석열 정부, 블랙리스트 작성 사업주 엄중 처벌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조합을 기득권으로 왜곡하며, 노동조합 밖 노동자 처우 개선 지원방안 검토를 발표했습니다. 노동조합에 관한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10명 중 8명 정도가 노동조합이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데 반해, 실제 노동조합 가입률은 13% 정도입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권리를 보장받고 싶어도 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원인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공단 사장들이 돌려본다는 소문이 도는 블랙리스트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불이익을 당할지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노동자가 자신의 권리를 가장 잘 지키고, 삶과 일터를 바꿀 방법은 노동조합 가입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노동조합에 대한 왜곡과 악선동을 중단해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건 누구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을 비조합원에게 적용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는 업체를 강력히 처벌해야 합니다.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은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활발하게 활동할 것입니다.

무료 노동·법률상담, 가입문의  1811-9509



공단노동자신문 <바지락> 지난 호 보기

꿀팁. <바지락>을 모바일로 볼 수 있다는 사실.
알아두면 유익한 실전 노동법과 다양한 정보.
지난 내용이 궁금하다면, 찰칵!



민주노총 노동상담페이지

전국 어디서나 무료 노동상담 전화 1811-9509
온라인으로 노동 상담받고 싶다면? 찰칵!
누구나 쉽게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나와 우리의 일터를 바꾸고, 삶과 미래를 바꾸는 가장 큰 힘, 노동조합

무료 노동·법률상담, 가입문의  1811-9509

노동조합, 낯설고 어렵다고요?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이 뭉친 힘’으로, 사업주와 동등한 위치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려고 만든 ‘권리’입니다. 노동자들이 스스로 모여서, 노동자를 위해 만든 단체이자 조직이 바로 노동조합이죠. 사람이 태어나 살면서 자연스레 갖는 많은 권리와 똑같은 권리 중 하나입니다.

왠지 멀고 낯설고 망설여지나요? 걱정할 것 없습니다.

이미 100만 명이 넘는 노동자가 모여서 자기 일상을 살면서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금속노조(전국금속노동조합)는 전국 어디에나 있습니다. 조합원으로 가입해 현장에서 노동자의 힘을 키우고,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을 통해 불합리한 현장을 바꾸고, 소중한 노동의 가치를 지키려고 법과 제도를 바꾸는 활동을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싶은 노동자라면 주저 말고 노크하세요.